

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58
발의일자 및 발의자	2018년 3월 30일, 도지사
상정일자	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(2018년 4월 10일 상정, 의결)
심사결과	원안가결
주요내용	o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년 4월 11일

기획재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3월 30일, 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3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

(2018년 4월 10일 상정, 검토보고, 질의/답변, 토론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균형발전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 공포, 2014. 11. 29. 시행)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됨.

나. 주요내용

-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.

3.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오태철)

----- [별첨 1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첨부서류

○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[별첨 2]

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임.

1.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(이하 “지특회계”)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
- 도내 낙후된 지역의 지역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.

○ 조례안은 입법예고(2.28~3.20)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¹⁾를 거치는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.

1) 2.22. 서면심의로 원안가결하였음.

(참고 법령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2.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

- ‘14.5.28. 개정된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)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
 -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
 - 개정법 시행일인 ‘14.11.29.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 됨에 따라
 - 존속기한과 관련해 별도의 조례 개정이 없었던 ‘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’(이하 “지특회계”)는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‘18.12.31 만료하게 됨.

< 지방재정법 >

(법률 제12687호, ‘14.11.29. 시행, ‘14.5.28. 개정)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부 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.31 만료되는 지특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
- 특별회계는

-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으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해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²⁾
 -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그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법의 취지³⁾가 특별회계제도의 남용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함이 적절한지에 달려 있음.
- 도내 남·북부 또는 서·동부 지역은 지리적·역사적 영향과 군사·환경 관련 각종 규제 등으로 인구, 산업, 의료, 교육,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심해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한 도정 목표가 되었고
-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활수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집행, 사후적 사업 관리가 보다 용이한 특별회계로 운용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.
-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’가 계속 운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특회계를 일몰시키기보다 5년 더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3)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:1907796, 제안자:정부)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35쪽 中 “안전행정부에 따르면, ...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.”

3.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-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지특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
- 도내 지역 간 심화되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로 관리·운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음.

별첨 2

경기도 조례 제 호

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
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<u>제10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